

1. 개정이유

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,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행정처분 가중처분 시 적용 시점을 명확히 하고,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을 마련함 (안 별표3)

- 1) 현행 법령상 위반행위에 따른 가중처분 적용시점이 명확하지 않아 재량 해석이 가능하며, 차수 적용기준이 없어 국민의 권익침해가 우려됨

※ 국민권익위원회 ‘행정제재 가중처분 집행기준 명확화’ 권고(‘21.2.)

- 2)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 가중처분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고*,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**을 마련함

* 가중처분 적용 시점 : “위반행위가 적발된 날” 기준

** 가중처분 차수 적용기준 : “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가중처분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인 경우 높은 차수)의 다음 차수”

- 3)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제재처분의 근거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적정성·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3. 00. 00. ~ 00. 00.)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3 제1호나목 후단 중 “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”을 “기간의 계산”으로, “최초로 행정처분을 한”을 “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.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평가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(제20조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행정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[제2호(10)의 경우에는 3년간]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**기간의 계산**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**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**을 기준으로 한다.

다. **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(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**

라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·내용·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세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.

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평가대행업을 모범적으로 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-

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
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사항	관련 조항	행정처분기준			
		1차	2차	3차	4차 이상
(1) 법 제16조에 따른 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·시설·장비가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5호				
(가) 등록요건의 기술능력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부족한 경우		경고	업무정지 1월	업무정지 3월	업무정지 6월
(나) 등록요건의 기술인력 에 속하는 기술인력이 전혀 없는 경우		등록취소			
(다) 1개월 이상 시험장비 가 없는 경우		업무정지 6개월	등록취소		
(라) 구비하여야 하는 장 비가 부족한 경우		경고	업무정지 1월	업무정지 3월	업무정지 6월
(마) 구비하여야 하는 장 비가 전혀 없는 경우		등록취소			
(2) 법 제16조제2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1호	등록취소			
(3) 거짓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2호	등록취소			
(4) 최근 1년 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3호	등록취소			
(5)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 이나 명의를 대여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4호	등록취소			
(6) 법 제16조제3항제2호에	법 제17조	업무정지	업무정지	등록취소	

위반하여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복제한 경우	제1항제6호	3월	6월		
(7)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 위반하여 평가서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7호	경고	업무정지 1월	업무정지 3월	업무정지 6월
(8)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 위반하여 도급받은 화재위험평가 업무를 하도급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8호	업무정지 6월	등록취소		
(9) 화재위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9호	업무정지 6월	등록취소		
(10)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실적이 없는 경우	법 제17조 제1항제10호	경고	등록취소		
(11) 업무정지처분기간 중 신규계약에 의하여 화재위험평가대행업무를 한 경우	법 제17조 제2항	등록취소			